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상 정
(2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1-1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1
202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9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구성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군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관 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 기준 신설(안 제6조제4항, 별표 4)

나. 법령 개정·위배·재기재 사항 등 정비(안 제5조·제7조·제9조·제10조, 별표 2)

1) 용어 정비

가) 전염병 ⇒ 감염병

나) 3급이상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삭제: 손해배상, 준용, 시행규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2. 15.~2021. 1.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복지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제9조·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감면대상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감면을 100분의 50란에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염병</u> 질환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p>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② <u>군수는</u>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7조(손해배상) <u>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 사용을 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의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u></p>	<p>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염병</u> 질환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p>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② <u>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u>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p> <p>④ <u>군수는 복지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u></p>	<p><u><삭 제></u></p>
<p><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별표 2]

복지관 사용료 감면율(제6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p>100분의 50</p>

[별표 4]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요금 및 감면 기준(제6조제4항관련)

1. 주차요금

(단위: 원)

구 분	일반차량			복지관 직원차량	
	30분초과부터 40분까지	40분초과 10분마다	하루	하루	한달
주차요금	500	200	5,000	2,000	30,000

가.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나. 1회 주차 시 누적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하루 주차요금을 받는다.

다. 주차 제한

- 1) 거창군이 시행하는 차량부제 운행대상 차량
- 2)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 3) 그 밖에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차요금 감면

감면 대상	감면율
가. 주차장에 30분 이내 주차 나. 복지관에 민원업무로 1시간 이내 주차 다. 복지관 수강생이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2시간 이내 주차 라. 관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마. 복지관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다만, 주차장 관리 부서에 협조 요청한 경우에 한정함)	100분의 100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함)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다만, 다음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탑승 한 경우에 한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다.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분류에 따름)	100분의 5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이 「체육시설법」 제5조·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재기재사항은 삭제하고 법령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1) 정의 삭제(현행 제2조)
- 2) 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안 제3조·제4조)

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안 제7조·제8조)

- 1) 군민이면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
- 2) 체육시설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3) 사용허가 기간 7일 이내로 제한하여 일부단체의 독점사용 예방
- 4)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같은 순위로 사용허가

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0조·제22조)

- 1)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제한,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
- 2)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 설치 금지

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자 확대(안 별표 2)

- 1)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모두 기재
- 2)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권고사항 반영

마. 사용료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안 별표 3)

- 1) 불가항력적인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 2) 군의 귀책사유 시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2. 9.~2020. 12.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활용실태를 수시로”를 “이용실태를 분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

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용일 7일 전
2.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청: 사용일 3일 전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을 각각 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기존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3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개인·단체·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한할 수 있다.”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각 호 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 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
- 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9조제1호·제3호의 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2. 국민체육센터 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 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 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중 100분의 50 감경 대상을 별지와 같이 하고, 비고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거창군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사격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고제면 문화체육회관을 말한다.</p> <p>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상설 스포츠교실 등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관람자”란 사용자가 개최하는 체육경기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5. “관람권”이란 사용자가 체육경기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p> <p>6.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p>	<p><u><삭 제></u></p>

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12. 삭제<2018.10.31.>

1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삭 제>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용일 7일 전
2.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 사용일 3일 전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신 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경기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개인·단체·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경기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신 설>

<신 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9조제1호·제3호의 사유로 사용 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제16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2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삭 제>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제15조제1항관련)

감경대상	감경률
<p>다음 각 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18세 이하 자녀 14.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p>100 분의 50</p>

비고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 관련)

구분	반환 기준
1.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가. 사용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2.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가.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 사용료 전액 + 위약금 다. 사용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 준용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가. 예약한 그날: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다.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 사용료 전액 - 위약금 라. 사용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나목 준용

위약금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말한다.